

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7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기능이 감소된 치산사업소를 폐지하여 임업시험장에 통합하기 위하여
- 기존의 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기구인 '산림환경연구소'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'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'로 하고
- 사업소의 기능을 당초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기능에서 사방사업의 설계, 시공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,
- 조문중에 '시험장장'을 '연구소장'으로, '장무'를 '소무' 등으로 변경된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,
- 부칙에서 '치산사업소조례'를 동시폐지하는 것임.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(별첨)
- 지방자치법시행령 (별첨)
- 내무부 지침 (별첨)

##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” 로 한다.

“제1조(설치)”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설치)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치산사업 시행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 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내지 제3조(기관의 병설) 중 “시험장” 을 “연구소” 로 하고

제4조(업무)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
2. 중앙임업시험장과의 지역적 연락시험
3.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
4. 사방사업의 설계.시공 및 시설의 보호관리
5. 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
6. 임도시설의 설계.시공 및 산사태 예방복구
7. 기타 임업발전에 관한 사항

“제5조(장장, 병원장, 학교장)” 을 “제5조(소장, 병원장, 학교장)” 으로 하고 제1항중 “시험장” 을 “연구소” 로, 제2항 및 제3항중 “장장” 을 “소장” 으로, “장무” 를 “소무” 로 한다.

제6조(정원 및 출장소) 내지 제13조(공시종자의 봉합)와 제15조(수수료의 면제) 중 “시험장” 을 “연구소” 로, “시험장장” 을 “연구소장” 으로, “장장” 을 “소장” 으로 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내지 (별지 제3호 서식)중 “임업시험장장”을 “산림환경연구소장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 신 구조문 대비 표

현	행	개	정
<u>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</u>		<u>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</u>	
<p>제1조 (설치) <u>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묘목의 생산,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,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충청북도임업시험장(이하 '시험장' 이라 한다)을 둔다.</u></p> <p>제2조 (위치) <u>시험장은 청주시 용암동에 둔다.</u></p> <p>제3조 (기관의 병설) <u>시험장내에 산림피해 발생예찰 방역 및 상담을 위한 산림병원(이하 '병원' 이라 한다)과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(이하 '학교'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4조 (업무) ①<u>시험장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</u>            1.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           2. 중앙임업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           3. <u>우량묘목의 생산</u>            4. <u>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립 및 보호</u>                ( 신   설 )                ( 신   설 )                ( 신   설 )            5. 기타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           ② <u>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</u>            1~3. (생   략)            ③ <u>학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</u>            1~2. (생   략)</p> <p>제5조 (장장, 병원장, 학교장) ①<u>시험장에 장장을 두며 지방농업연구원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.</u>            ② <u>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장무를 처리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</u>            ③ <u>병원장 및 학교장은 장장이 겸임한다.</u></p> <p>제6조 (정원 및 출장소) ①<u>시험장에 필요한 공무원 을 두되,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            ② <u>병원, 학교에는 별도 공무원을 두지않고 시험장 공무원이 겸임한다.</u>            ③ (생   략)</p> <p>제7조 (전문연구원 및 강사) ①<u>도지사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, 기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험장에 약간명의 산림관계 전문연구 원과 강사를 둘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② (생   략)</p>		<p>제1조 (설치) <u>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치산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 소(이하 '연구소' 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2조 (위치) <u>연구소는 -----</u></p> <p>제3조 (기관의 병설) <u>연구소내에 -----</u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제4조(업무) ①<u>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</u>            1. -----            2. -----            3. <u>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립 및 보호</u>            4. <u>사방사업의 설계, 시공 및 시설의 보호관리</u>            5. <u>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</u>            6. <u>임도시설의 설계, 시공 및 산사태 예방복구</u>            7. -----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1~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1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소장, 병원장, 학교장) ① <u>연구소에 소장을 두 며 -----</u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② <u>소장은 ----- 소무를 -----</u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③ ----- <u>소장이 -----</u></p> <p>제6조 (정원 및 출장소) ①<u>연구소에 -----</u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② ----- <u>연구소</u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전문연구원 및 강사) ① -----            ----- <u>연구소에 -----</u>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
<p>제8조 (시험 및 감정위탁등) ①시험장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 (이하 '위탁자' 라 한다)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시험장장(이하 '장장'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험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 (시험 및 감정위탁등) ①연구소에 ----- ----- ----- 연구소장(이하 '소장' 이라 한다)----- ----- ② ----- 소장이 ----- -----</p>
<p>제9조 (수탁의 거부) ①장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위탁서를 받았을 때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통고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 (수탁의 거부) ①소장은 ----- ----- ----- ② ----- 소장은 ----- -----</p>
<p>제10조 (기구등의 제공) 장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, 기구, 재료, 노무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 (기구등의 제공) 소장은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 (시험성적서) 장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 (시험성적서) 소장은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2조 (광고의 기재등) ① (생 략) ② 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게시, 기타의 기재사항은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 (광고의 기재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소장은 ----- -----</p>
<p>제13조 (공시종자의 봉합) ①장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봉합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 봉합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3조 (공시종자의 봉합) ①소장은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 (수수료) ①~② (생 략)</p>	<p>제14조 (수수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 (수수료의 면제) 장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 (수수료의 면제) 소장은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 (시행규칙) (생 략)</p>	<p>제16조 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(별지 제1호 서식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② (다른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  <u>치산사업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u></p> <p>(별지 제1호 서식)</p>
(생략)	(현행과 같음)
<p>임업시험위탁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  신 청 인 (인)</p> <p><u>임업시험장장</u> 귀하</p>	<p>-----  ----- 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 -----</p> <p><u>산림환경연구소장</u> 귀하</p>
(생략)	(현행과 같음)
(별지 제2호 서식)	(별지 제2호 서식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임업시험장장</u> (인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산림환경연구소장</u> (인)</p>
(별지 제3호 서식)	(별지 제3호 서식)
(생략)	(현행과 같음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(인)</p> <p><u>임업시험장장</u> 귀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><u>산림환경연구소장</u> 귀하</p>
(생략)	(현행과 같음)